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과천시의회
GWACHEON-CITY COUNCIL

이런 사람 나라살림연구소
Fiscal ReForm Institute

제 출 문

과천시의회 귀하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보고서를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0.

발주처	과천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황선희	
의원	우윤화 하영주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요약문

1. 과천시 자치법규 현황 분석

- 2023년 7월 현재 과천시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해 594개로 이 중 조례는 414개, 규칙은 119개, 훈령 56개, 예규 5개이며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자치법규 수로는 세 번째, 조례로는 다섯번째로 적은 자치법규를 갖고 있음
- 과천시 자치법규는 의회,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을 포함해 과천시 조직 중 23개의 과, 3개의 사업소(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를 기준으로 29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편은 제4편 ‘자치행정’, 제2편 ‘기획홍보’, 제1편 ‘의회’ 및 제11편 ‘지역경제’ 순이었음
-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필수조례 정비와 관련해 2023년 6월 현재, 필수조례 정비율은 77.8%이고 전체 266건 중 207건을 정비하여 경기도 자치단체 중 과천시가 가장 낮은 정비율을 보였음
- 과천시 사회조사 등 지역 현황을 기초로 봤을때 어르신, 1인 가구, 저출산 대책, 주택, 청년, 보육 등에 대한 정책 및 조례 입법 검토 필요
- 인구와 지역 특성,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구리시와 의왕시를 비교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해 조례의 편 구성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의 경우 ‘자치행정’-‘기획홍보’-‘의회’-‘지역경제’순으로 조례가 많았고, 의왕시의 경우 ‘노인장애인’-‘자치행정’-‘기획예산’-‘가족아동’ 순으로 많았음. 반면 구리시는 ‘평생학습’-‘총무’-‘노인장애인복지’-‘안전총괄’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정비 대상 조례 분석 및 정비 방안

1)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분야

- 과천시는 타자치단체에 비해 노인 분야 조례는 적지만 노인 대상 수당 지원 관련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편인 것이 특징으로 수당 지원 외에 노인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입법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복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는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인분야 신규조례로는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조례나 홀로 사는 노인이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등 관련 조례 입법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장애인 분야 조례 역시 타자치단체에 비해 적었으며 특정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개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과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분야 신규 조례로는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 등에 대한 입법 고려

2) 문화체육 분야

- 과천시의 문화체육 분야 조례는 일반적인 조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천시 관광자원(청계산, 관악산, 박물관 등) 활용을 위한 관광진흥 조례 입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지원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또한 과천시는 체육시설이 경기도 내 기초단체 중 일곱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학교체육 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혹은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입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많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도시 정책 및 도시정비 분야

- 과천시의 도시정책 및 도시정비 분야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조례로 입법해야할 일반적인 조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디자인 관련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아 과천시가 도시디자인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천시가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동주택과 관련한 입법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원도심 활성화 등에 관한 입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4) 폐지 조례 검토

- 조례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사라진 조례를 비롯해, 현재 상황과 맞는 내용으로 새롭게 입법되어야할 조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유사한 내용의 조례와 통합해야할 조례 등을 검토
-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과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관한 실비보상 조례」와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시대적 상황에 맞는 내용의 조례로 새롭게 입법하며 「과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와 「과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기존 유사 조례에 통합하는 방안 제시

5) 의회 운영 관련 조례 검토

- 상위법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의회 운영 관련 조례들을 검토하고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규정, 의안 발의 요건과 관련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3. 자치법규 심의 강화 방안

- 자치법규 심의 강화 방안으로 과천시 재정 사업의 집행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근거 법령 명시 등 사업설명서의 개선 방안과 함께 조례 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검토를 토대로 조례 심의를 강화할 것을 타자치단체 사례를 통해 제안
-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조례 심의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할 것 제안

■ 목 차

I.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1
2. 연구목표	2
3. 연구범위	2
4. 연구 내용	2

II. 과천시 자치법규 현황 분석

1. 과천시 자치법규 기본 현황	4
1) 과천시 자치법규 수	4
2) 과천시 자치법규 편장 구성	7
3) 제·개정 시기별 조례 현황	9
2. 과천시 필수 조례 정비 현황	11
1) 과천시 필수조례 정비율 현황	11
2) 과천시 필수조례 미정비 현황	13
3. 과천시 지역 현황	16
1) 과천시 기본 현황	16
2) 과천시 지역 특징 및 시민 수요 분석	18
4. 유사자치단체 조례 비교를 통해 본 과천시 조례 특징	21
1) 비교 자치단체 선정 기준	21
2) 비교 자치단체 선정 분석	22

III. 정비대상 조례 분석 및 정비 방안

1.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분야	24
1) 조례 현황	24
2) 조례 분석 및 개정 방향	28
3) 소결	52
2. 과천시 문화체육 분야	53
1) 조례 현황	53
2) 조례 분석 및 개정 방향	57

3) 소결	70
3. 도시정책 및 도시정비 분야	72
1) 조례 현황	72
2) 조례 분석 및 개정 방향	75
3) 소결	80
4. 폐지 검토 조례	81
5. 의회 운영 관련 조례 입법 검토	85

IV. 자치법규 심의 강화 방안

1. 조례 입법 절차와 조례 심의	91
2. 자치법규 심의 강화 방안 제안	96
1) 과천시 재정 사업 집행에 대한 근거 파악	96
2) 의안 비용추계 제도 활용	10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활용	107
〈별첨〉 조례 입법 제안 목록	111

■ 표 차례

[표 1] 과천시 자치법규 수	4
[표 2]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비교	5
[표 3] 과천시 조례 현황	7
[표 4] 2013년 이전 제·개정된 조례 현황	9
[표 5] 경기도 내 자치단체 필수 조례 정비 현황	11
[표 6] 필수조례 미정비 현황	13
[표 7] 유사 자치단체별 조례 비교	22
[표 8] 과천시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분야 조례 현황	25
[표 9] 의왕시 및 구리시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 조례 현황	25
[표 10]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선정위원회 구성	28
[표 1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수탁자선정위원회 제21조	29
[표 12] 과천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위원회 구성 관련	30
[표 13]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30
[표 14]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1
[표 15]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대관료와 이용료	32
[표 16]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2
[표 17] 여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35
[표 18]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35
[표 19]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36
[표 20]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37
[표 21]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38
[표 22]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38
[표 23] 서울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39
[표 24] 경기 이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39
[표 25]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41
[표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42
[표 27] 경기도 내 자치단체 효도 수당(효행 장려금) 비교	43
[표 28]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중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44
[표 29] 장애아동 재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45
[표 30]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48

[표 31]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49
[표 32]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50
[표 33] 과천시 문화체육 분야 조례 현황	53
[표 34] 의왕시 및 구리시 문화체육 분야 조례 현황	54
[표 35]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57
[표 36]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57
[표 37]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58
[표 38]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58
[표 3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60
[표 40]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1
[표 41]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63
[표 42]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65
[표 43]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65
[표 44] 경기도 내 공공체육시설 현황	70
[표 45] 과천시 도시정책 및 도시정비 분야 조례 현황	72
[표 46] 의왕시 및 구리시 도시 정책 및 도시 정비 분야 조례 현황	73
[표 4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75
[표 48] 원도심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	79
[표 49]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4
[표 50] 지방자치법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	85
[표 51]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정책지원관 조항	85
[표 52]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86
[표 53] 경기도 내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 현황	86
[표 54] 지방자치법 중 의안 발의 관련 조항	90
[표 55]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중 의안 발의 조항	90
[표 56] 지방자치법에서 의안 비용추계 관련 조항	101
[표 57]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01
[표 58]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중 비용 추계 생략	106
[표 59]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중 재원조달 방안 관련	106

■ 그림 차례

[그림 1] 노인인구 증감률	17
[그림 2] 우선 보육지원	18
[그림 3]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18
[그림 4] 저출산의 원인	19
[그림 5] 전승활동비 등 지급 기준	61
[그림 6]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사업 내용	82
[그림 7] 포천시의회 조직도	88
[그림 8] 자치법규의 제정 절차 흐름도	95
[그림 9] 과천시 주요사업설명서 사례	97
[그림 10]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98
[그림 11] 부산 중구 조례안 비용추계서	103
[그림 12] 하남시의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104
[그림 13] 성남시 조례안 사례	107
[그림 14] 서대문구의회 검토보고서 사례	109

I .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지 30년이 지나면서 지방의원의 입법역량이 성장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활발해졌음
- 다만, 조례의 입법이 활발해진 데 반해 유사 조례 입법, 장기간 개정이 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례 및 현실 미반영 조례 등도 늘어나고 있음. 또한, 시민 불편 초래, 복잡한 행정절차 요구, 상위법령 불부합 등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 과천시 2023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제정된 자치법규는 583건임. 이 중 조례는 404개, 규칙은 118건, 훈령 54건, 예규 7건임
-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지난 10년 개정이 없었던 자치법규 2,444건을 내년 말까지 일제 정비하도록 자치단체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제9대 과천시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시점임
-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법규와 분야별, 주제별 비교분석을 통해 과천시 자치법규 특성을 확인하고 우수지역 사례를 발굴하고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
- 유사 규모의 타 자치단체 사례, 우수 조례 등을 검토하고 과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정합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2. 연구목표

- 과천시 자치법규를 분야별, 부서별, 주제별 분류 등을 통한 현황과 특징 분석
- 과천시 조례 중 시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등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를 점검하고 정비 방안 마련
- 조례 분석을 통해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

3.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과천시
- 시간적 범위 : 2022년 12월 이전 제·개정된 조례 전체
- 내용적 범위 : 과천시 자치법규 분석 및 정비

4. 연구 내용

☐ 과천시 조례의 분야별 현황 및 특징 분석

- 과천시 자치법규를 분야별, 부서별, 주제별 분류를 통한 현황 파악
- 과천시 자치법규 키워드 중심 분석을 통한 특징 분석
-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정비 대상 조례 정비현황 점검

☐ 우선적 정비대상 조례 점검

- 2022년 12월 이전에 제·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되지 않은 과천시 조례 중 정비 대상 자치법규 선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쉬운 용어로 정비, 적용 대상 없는 조례 등의 기준 적용

- 노인 복지 및 장애인 복지, 문화·체육, 도시개발, 의회 분야에 집중 분석

□ 정비대상 조례의 개정안 제시

- 선정된 정비대상 조례를 법제처,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천시 현황에 적합한 제·개정안 조례안 초안 마련

□ 실질적 활용을 위한 연구 진행

- 조례를 통한 예·결산 심사·행정사무감사 등에 활용 가능한 방안 제시
- 잘못된 조례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 시행 발굴

II. 과천시 자치법규 현황 분석

1. 과천시 자치법규 기본 현황

1) 과천시 자치법규 수

□ 과천시 현행 자치법규 수는 594개

- 과천시 자치법규는 2023년 7월 14일 현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해 594개로 이 중 조례는 414개, 규칙은 119개, 훈령 56개, 예규 5개임
- 폐지된 과천시 자치법규는 조례 180개, 규칙 39개, 훈령 57개, 예규 11개 등 317개임

[표 1] 과천시 자치법규 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기타	총합
현행법규	414	119	56	5	0	594
폐지된법규	180	69	57	11	0	317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2023년 7월 14일 현재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조례 수 적어

- 과천시 자치법규 현황을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자치법규 수로는 세 번째로 가장 적은 자치법규를 갖고 있음
 - 경기도 내에서 자치법규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로 모두 854개의 자치법규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성남시(826개), 고양시(781개), 화성시(779개), 안양시(762개) 등의 순이었음
 - 경기도 내에서 자치법규 수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동두천시로 577개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천군(590개), 과천시(594개), 의왕시(596개), 군포시(600개) 순이었음

○ 조례 수로는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다섯번째로 적은 조례를 갖고 있음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수원시가 모두 604개의 조례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578개), 고양시(568개), 화성시(568개), 평택시(547개) 순이었음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연천군으로 401개였으며, 동두천시(409개), 양주시(412개), 의왕시(413개) 등의 순이었음

[표 2]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비교

자치단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자치법규수
경기도 수원시	604	165	61	24	854
경기도 성남시	578	161	71	16	826
경기도 고양시	568	148	58	7	781
경기도 화성시	568	136	45	30	779
경기도 평택시	547	132	60	17	756
경기도 여주시	541	129	49	6	725
경기도 안산시	539	129	61	20	749
경기도 안양시	529	139	81	13	762
경기도 이천시	528	134	60	10	732
경기도 하남시	527	121	47	9	704
경기도 시흥시	527	125	63	24	739
경기도 남양주시	526	130	60	20	736
경기도 부천시	525	132	67	21	745
경기도 파주시	521	137	67	28	753
경기도 용인시	511	149	59	20	739
경기도 김포시	507	133	64	14	718
경기도 안성시	498	133	51	26	708
경기도 광명시	497	110	66	21	694

자치단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자치법규수
경기도 의정부시	482	118	47	17	664
경기도 광주시	471	117	60	13	661
경기도 오산시	468	118	46	25	657
경기도 구리시	466	116	58	23	663
경기도 가평군	452	119	52	14	637
경기도 포천시	448	118	50	21	637
경기도 양평군	426	117	50	12	605
경기도 군포시	418	105	62	15	600
경기도 과천시	414	119	56	5	594
경기도 의왕시	413	113	60	10	596
경기도 양주시	412	128	69	31	640
경기도 동두천시	409	124	37	7	577
경기도 연천군	401	123	44	22	590
평균	494.2	128.3	57.5	17.5	697.5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2023년 7월 14일 현재

2) 과천시 자치법규 편장 구성

□ 자치법규 편별 구성은 과천시 조직과 동일하게 구성

- 각 편별 자치법규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타자치단체들은 편과 장으로 자치법규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과천시의 경우 편 아래에 별도의 장을 두지 않고 편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과천시 자치법규는 의회,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을 포함해 과천시 조직 중 23개의 과, 3개의 사업소(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를 기준으로 29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음
- 404개 조례의 구성에 있어 가장 많은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편은 제4편 ‘자치행정’으로 총 40개의 조례(9.90%)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2편 ‘기획홍보’ 27개(6.68%), 제1편 ‘의회’와 제11편 ‘지역경제’가 각각 24개 조례(5.94%), 사회복지 23개(5.69%), 제6편 안전재난과 제15편 교육청소년이 각각 22개(5.45%), 제5편 문화체육 20개(4.95%)로 구성되었음

[표 3] 과천시 조례 현황

편명	조례수	비중	관련 부서
제1편 의회	24	5.94	의회 사무과
제2편 기획홍보	27	6.68	기획홍보담당관
제3편 적극행정	17	4.21	적극행정담당관
제4편 자치행정	40	9.90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제5편 문화체육	20	4.95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과
제6편 안전재난	22	5.45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제7편 회계	10	2.48	행정안전국 회계과
제8편 세무	10	2.48	행정안전국 세무과
제9편 열린민원	7	1.73	행정안전국 열린민원과
제10편 정보통신	7	1.73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제11편 지역경제	24	5.94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제12편 복지정책	18	4.46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편명	조례수	비중	관련 부서
제13편 사회복지	23	5.69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제14편 가족아동	16	3.96	경제복지국 가족아동과
제15편 교육청소년	22	5.45	경제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제16편 기후환경	18	4.46	경제복지국 기후환경과
제17편 자원위생	12	2.97	경제복지국 자원위생과
제18편 도시정책	6	1.49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제19편 신도시조성	2	0.50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
제20편 도시정비	7	1.73	건설도시국 도시정비과
제21편 교통	12	2.97	건설도시국 교통과
제22편 건설	11	2.72	건설도시국 건설과
제23편 건축	10	2.48	건설도시국 건축과
제24편 공원녹지	10	2.48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제25편 질병관리	10	2.48	보건소 질병관리과
제26편 건강증진	7	1.73	보건소 건강증진과
제27편 정보과학도서관	3	0.74	정보과학도서관
제28편 맑은물사업소	6	1.49	맑은물사업소
제29편 환경사업소	3	0.74	환경사업소
합계	404	100.0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2023년 5월 현재

3) 제·개정 시기별 조례 현황

□ 과천시 조례 중 제·개정된지 10년 경과한 조례는 모두 27개

- 과천시 조례 404건 중 일괄 정비 조례 5건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조례는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로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으며 「과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도 2008년 7월 31일 제정되어 개정된 적이 없음
- 제·개정된지 10년이 경과한 조례는 모두 27개 조례임

[표 4] 2013년 이전 제·개정된 조례 현황

제명	소관부서	제·개정일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2005년12월29일
과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경제복지국 기후환경과	2008년02월26일
과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2008년07월31일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2010년04월30일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2010년04월30일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2010년04월30일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2010년12월30일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행정안전국 세무과	2011년06월20일
과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2012년06월27일
과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2013년10월29일
과천시의회 공인 조례		2013년12월30일
과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기획홍보담당관	2013년12월30일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기획홍보담당관	2013년12월30일
과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기획홍보담당관	2013년12월30일

제명	소관부서	제·개정일
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적극행정담당관	2013년12월30일
과천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적극행정담당관	2013년12월30일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2013년12월30일
과천시 시민의 날 조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2013년12월30일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2013년12월30일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2013년12월30일
과천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2013년12월30일
과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2013년12월30일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국 회계과	2013년12월30일
과천시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행정안전국 열린민원과	2013년12월30일
과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건설도시국 건설과	2013년12월30일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2013년12월30일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 조례	보건소 질병관리과	2013년12월30일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2023년 5월 현재

2. 과천시 필수 조례 정비 현황

1) 과천시 필수조례 정비율 현황

□ 과천시 필수조례 정비율 77.80%

- 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를 의미함
- 2023년 6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과천시 필수조례 정비율은 77.8%이고 전체 266건 중 207건을 정비하였음
 - 경기도 본청을 포함한 32개 자치단체 필수조례 정비율은 평균 81.2%이며 가장 높은 정비율은 경기도 이천시 85.9%, 경기도 구리시 85.4% 등의 순
 - 과천시가 가장 낮은 정비율을 보였음

[표 5] 경기도 내 자치단체 필수 조례 정비 현황

자치단체명	정비율	정비완료/정비대상
경기도 이천시	85.90%	232/270
경기도 구리시	85.40%	229/268
경기도 파주시	84.40%	228/270
경기도 안성시	84.00%	225/268
경기도 화성시	83.80%	259/309
경기도 광주시	83.70%	226/270
경기도 광명시	83.30%	224/269
경기도 가평군	83.10%	222/267
경기도 오산시	82.80%	222/268
경기도 고양시	82.70%	258/312
경기도 의왕시	82.10%	220/268
경기도 수원시	81.90%	254/310
경기도 부천시	81.10%	249/307
경기도 여주시	81.10%	219/270

자치단체명	정비율	정비완료/정비대상
경기도 동두천시	80.90%	216/267
경기도 남양주시	80.60%	249/309
경기도 평택시	80.60%	237/294
경기도 시흥시	80.50%	235/292
경기도 안양시	80.50%	248/308
경기도 양평군	80.40%	213/265
경기도 연천군	80.40%	213/265
경기도 성남시	80.30%	248/309
경기도 의정부시	80.30%	216/269
경기도 김포시	80.10%	217/271
경기도 안산시	79.90%	247/309
경기도 용인시	79.60%	246/309
경기도 포천시	79.20%	213/269
경기도 하남시	79.20%	213/269
경기도 양주시	78.70%	207/263
경기도 본청	78.10%	264/338
경기도 군포시	78.10%	211/270
경기도 과천시	77.80%	207/266
경기도 평균	81.2%	7367/906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과천시 필수조례 미정비 현황

- 필수조례 정비 대상 법령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법령은 36개 법령의 59개 조문으로 확인되며 조례의 제·개정 검토
-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필수조례 정비율이 가장 낮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필수조례 정비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6] 필수조례 미정비 현황

법령명	법령조문	시행일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2022. 8. 4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2022. 8. 4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023. 5.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2023. 1.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2023. 3. 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2022. 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2022. 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2022. 4.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2023. 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2023. 1.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2023. 7. 19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2015. 12. 29

법령명	법령조문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2021. 7. 13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017. 9. 22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18. 4. 19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18. 4. 19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18. 4. 19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23. 3. 21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017. 9. 22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2022. 12.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2023. 10. 19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2023. 10. 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2022. 6. 22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2017. 12. 3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2017. 12. 2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2017. 7.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2017. 10. 31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수수료)	2021. 6.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2023. 9. 29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2018. 6.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2017. 7. 26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2017. 7. 26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2017. 7. 2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2022. 1. 13
	제11조(이의신청 등)	2022. 1. 13

법령명	법령조문	시행일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성심의회)	2022. 10. 27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2016. 12. 30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2016. 12. 30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6. 12. 3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2017. 7. 26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2022. 12. 27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2017. 7. 26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2017. 7.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2023. 3. 14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2023. 9. 22
	제47조의2(인사청문회)	2023. 9. 22
	제63조의2(교섭단체)	2023. 9. 22
	제63조의2(교섭단체)	2023. 9. 22
	제63조의2(교섭단체)	2023. 9. 22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2022. 1. 13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2022. 1. 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2022. 1. 13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2022. 1. 13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2022. 1. 1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2017. 3. 30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2023. 3. 2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2022. 4. 28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2018. 1. 16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2016. 12. 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과천시 지역 현황

1) 과천시 기본 현황

- 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입법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현황과 주민의 생활 환경,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이를 위해 과천시 2022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지역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조례 개정 방향에 반영하도록 함
- (인구규모) 2021년 과천시의 총인구는 73,528명으로 내국인은 73,345명, 외국인은 183명으로 나타남
 - 총인구는 2020년 대비 16.0% 증가함
 - 세대수는 전년 대비 3,889세대 증가하여 27,262세대로 나타남
 - 총인구는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인은 2021년 기준 총인구의 0.2%의 비율을 차지함
- (연령별 인구) 2021년 과천시의 연령별 인구는 50대가 12,677명(17.3%)으로 가장 많고, 40대 10,892명(14.9%), 30대 10,669명(14.6%) 순이며 15세 미만 인구는 2017년 13.1%에서 2021년 13.6%로 0.5%p 증가함.

□ 노인 인구의 증가

- (노인 인구의 증가) 2021년 과천시 노인인구(65세 이상)는 10,358명으로 전년 대비 1,364명(15.2%) 증가함
 -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9년까지는 경기도보다 과천시 노인인구 증감률이 낮았으나 2020년부터는

경기도 노인인구 증감률보다 과천시 노인인구 증가률이 높았음

- 2021년 과천시 노인인구 증감률은 15.2%로 경기도 노인인구 증감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노인인구 증감률



〈출처: 2022년 과천시 사회조사보고서〉

□ 1인 가구의 증가

- (1인 가구의 증가) 2021년 과천시 1인 가구는 4,397가구로 2019년 대비 924가구(26.6%)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2,080가구, 여자 2,317가구로 여자 1인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가구가 22.0%로 가장 많고, 60대(17.5%), 40대, 70대 (각각 13.6%) 순임

□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가장 커

-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2021년 과천시 전체 사업체 수는 6,039개로, 2017년 대비 2,411개(66.5%) 증가함

-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과천시 전체 산업의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9.6%), 운수 및 창고업(7.9%) 순임

2) 과천시 지역 특징 및 시민 수요 분석

□ 보육시설 확충 요구

- (우선 보육지원)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이 2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비 지원금액의 확대' 21.3%, '보육비 지원대상의 확대' 14.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우선 보육지원



〈출처: 2022년 과천시 사회조사보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현 거주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 기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긍정 평가는 25.5%,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긍정 평가는 30.0%로 나타남

[그림 4]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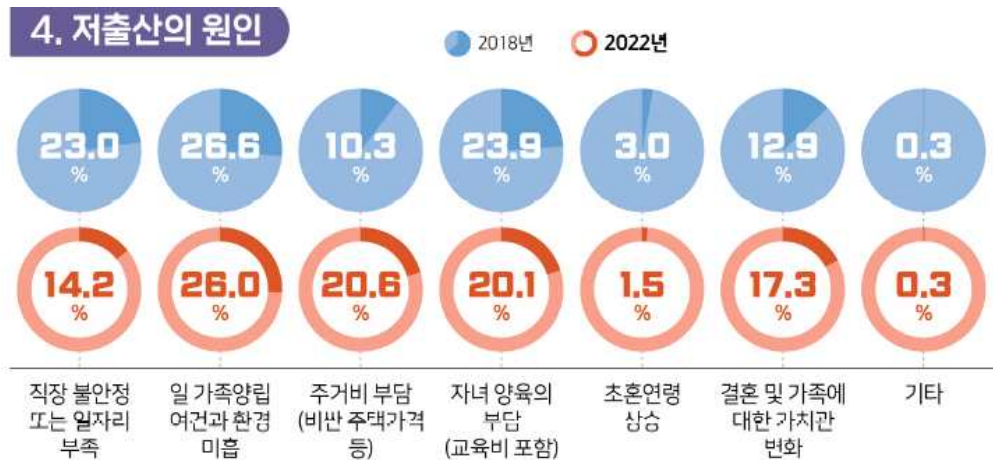


〈출처: 2022년 과천시 사회조사보고서〉

□ 저출산의 원인은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 가족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이 2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비싼 주택 가격 등)' 20.6%, '자녀 양육의 부담(교육비 포함)' 20.1% 순

[그림 5] 저출산의 원인



〈출처: 2022년 과천시 사회조사보고서〉

□ 청년은 일자리, 노인은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

- (대상별 필요정책) 청년, 여성, 어르신, 아동 대상별로 가장 필요한 정책
- 청년은 '일자리 및 고용 활성화'가 6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금융지원' 19.1%, '창업 활성화 및 지원' 8.2% 순
 - 여성은 '가정·육아서비스 지원확대'가 34.8%로 가장 높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31.6%, '여성복지 시설 및 서비스 확대' 16.8% 순
 - 어르신은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가 35.8%로 가장 높고, '노인 일자리 제공' 29.5%, '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 16.6% 순
 - 아동·청소년은 '여가·문화·체육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33.1%로 가장 높고,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29.3%, '양육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27.1% 순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이 2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 24.4%, '장애인편의시설 및 이동지원 서비스' 23.5% 순
-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과천시에는 어르신, 1인 가구, 저출산 대책, 주택, 청년, 보육 등에 대한 정책 및 조례 입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유사자치단체 조례 비교를 통해 본 과천시 조례 특징

1) 비교 자치단체 선정 기준

- (비교 대상 선정) 과천시 조례 제·개정 현황 및 구성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조례 특징을 살펴보고 타 자치단체 비교를 통한 조례 입안 가능성을 검토함
 - 비교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인구현황(인구규모 35%, 인구증감률 10%, 노령인구비율 5%)과 재정현황(재정력지수 35%, 세출결산규모 10%, 사회복지비 비율 5%)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유사유형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함
 -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자치단체 유형화 기준에 따르면 과천시는 경기도 내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등 20개 자치단체와 시-2 유형에 속해 있음
 - 과천시의 인구 현황과 재정현황, 지리적 입지 등에서 과천시와 유사점이 있는 구리시와 의왕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함
- (비교 분석 방안) 연구대상인 과천시 조례의 편별 구성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인 두 개 단체 각각의 조례 구성에서 나타난 특징을 확인하고 과천시의 향후 조례 입안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확인함

2) 비교 자치단체 선정 분석

- 비교 대상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과천시 404개 조례로 가장 적었으며 의왕시가 408개, 구리시가 461개였음
- 분야별 조례를 판단할 수 있는 편별 조례 건수를 비교해보면 과천시의 경우 ‘자치행정’-‘기획홍보’-‘의회’-‘지역경제’순으로 조례가 많았고, 의왕시의 경우 ‘노인장애인(과천시의 경우 사회복지 해당)’-‘자치행정’-‘기획예산’-‘가족아동’ 순으로 많았음. 반면 구리시는 ‘평생학습(과천시의 경우 교육청소년 해당)’-‘총무(과천시의 경우 자치행정 해당)’-‘노인장애인복지’-‘안전총괄’ 등의 순이었음.

[표 기 유사 자치단체별 조례 비교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편명	건수	편명	건수	편명	건수
제1편 의회	24	제1편 의회	20	제1편 의회	22
제2편 기획홍보	27	제2편 기획예산	28	제2편 기획예산	22
제3편 적극행정	17	제3편 감사	3	제3편 감사	9
제4편 자치행정	40	제4편 홍보	3	제4편 행복소통	24
제5편 문화체육	20	제5편 총무	15	제5편 일자리경제	21
제6편 안전재난	22	제6편 자치행정	30	제6편 산업지원	19
제7편 회계	10	제7편 회계	7	제7편 세정	4
제8편 세무	10	제8편 민원지적	7	제8편 징수	6
제9편 열린민원	7	제9편 정보통신	6	제9편 위생안전	5
제10편 정보통신	7	제10편 세정	5	제10편 복지정책	22
제11편 지역경제	24	제11편 징수	4	제11편 노인장애인복지	30
제12편 복지정책	18	제12편 복지정책	15	제12편 여성가족	18
제13편 사회복지	23	제13편 노인장애인	32	제13편 평생학습	36
제14편 가족아동	16	제14편 가족아동	22	제14편 문화예술	18
제15편 교육청소년	22	제15편 문화관광	13	제15편 안전총괄	29
제16편 기후환경	18	제16편 체육청소년	18	제16편 도시계획	5
제17편 자원위생	12	제17편 도시정책	5	제17편 도로	12
제18편 도시정책	6	제18편 도시개발	3	제18편 교통행정과	14
제19편 신도시조성	2	제19편 도시정비	5	제19편 자동차관리	5
제20편 도시정비	7	제20편 건축과	11	제20편 건축	10
제21편 교통	12	제21편 도로건설	11	제21편 총무	31
제22편 건설	11	제22편 교통정책	11	제22편 정보통신	8
제23편 건축	10	제23편 대중교통	5	제23편 회계	9
제24편 공원녹지	10	제24편 안전총괄	19	제24편 민원봉사	3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편명	건수	편명	건수	편명	건수
제25편 질병관리	10	제25편 기업일자리	16	제25편 토지정보	4
제26편 건강증진	7	제26편 지역경제위생과	18	제26편 도시개발	5
제27편 정보과학도서관	3	제27편 도시농업	7	제27편 균형개발	1
제28편 맑은물사업소	6	제28편 공원녹지	4	제28편 보건행정	10
제29편 환경사업소	3	제29편 환경	14	제29편 건강증진	11
		제30편 자원관리	11	제30편 수택보건지소	1
		제31편 상하수	9	제31편 환경	17
		제32편 보건행정	8	제32편 자원행정	10
		제33편 건강증진	8	제33편 공원녹지	8
		제34편 평생교육	13	제34편 수도	5
		제35편 도서관정책	2	제35편 하수	5
				제36편 시립도서관	2
합계	404	합계	408	합계	461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Ⅲ. 정비 대상 조례 분석 및 정비방안

1.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분야

1) 조례 현황

□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조례는 20개 조례

○ 과천시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조례는 20개 조례임. 이중 노인 관련 조례는 7개 조례이며 장애인 관련 조례는 13개 조례임

[표 8] 과천시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분야 조례 현황

조례명	제·개정일
과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2008년07월31일
과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9년10월14일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10월14일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2021년09월28일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10월14일
과천시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04월14일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10월14일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2005년12월29일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19년07월01일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18년02월20일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년04월28일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2020년03월11일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2023년04월12일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07월01일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년04월28일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9년10월14일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9년04월26일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2019년07월01일

조례명	제·개정일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20년12월19일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2년12월23일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년 6월말 현재)

○ 비교 유사자치단체의 노인 및 장애인 분야 조례를 살펴보면 의왕시는 29개, 구리시 28개 조례가 있음

- 의왕시는 노인 관련 조례는 12개 조례이고 장애인 관련 조례는 17개 조례
- 구리시는 노인 관련 조례는 12개 조례이고 장애인 관련 조례는 16개 조례

○ 과천시 조례 중에 의왕시와 구리시에 없는 조례는 모두 3개 조례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의왕시와 구리시에 모두 있지만 과천시에 없는 조례는 모두 6개 조례

-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조례 등

[표 9] 의왕시 및 구리시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 조례 현황

의왕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어르신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구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의왕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의왕시노인의날조례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구리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구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왕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내용 포함	○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년 6월말 현재)

□ 조례 담당 부서는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과천시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는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임
 - 경제복지국에는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등 7개과가 있음
- 의왕시의 경우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리시도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
- 과천시의 경우 담당부서의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하고 있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 대상이 불분명함

2) 조례 분석 및 개정 방향

□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수탁자 선정 근거 상위법령 규정 필요

-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 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제6조에는 위탁기간 갱신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근거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이므로 계약기간 갱신과 관련한 제6조보다는 선정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4항에 상위 법령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함

[표 10]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선정위원회 구성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과천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81.12.31.)

② 복지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사람을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간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능력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과 직원 배치가 가능한 공익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81.12.31.)

④ 시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5조 (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표 1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수탁자선정위원회 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선정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필요

-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회의 당연직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등 집행부 당연직 위원이 4명으로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 집행부 중심의 선정위원회 구성은 위탁, 갱신 및 재위탁 과정에서 집행부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과천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 관계 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 위원의 구성을 줄이고, 민간위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 구성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위원장을 포함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및 집행부의 당연직 위원도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표 12] 과천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위원회 구성 관련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 관계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표 13]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복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수탁자를 제5조에 따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 수탁기관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검토

- 특정 기관의 장기 독점 구조를 막기 위한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양주시의 경우 1회 갱신만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참고해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하고 이후는 재위탁 절차를 거치도록 해 한 기관이 독점적 장기 운영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검토

[표 14]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취약계층 대상 대관료 및 이용료 면제 대상 확대 검토

- 조례 제9조에는 노인복지관은 과천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강당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음

- 조례 제10조에는 이용료 면제의 대상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관료 면제 대상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법 및 해당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와 사회복지사업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공익적 노인복지시설임
- 따라서 해당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기초수급자 외에 면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는 대상자들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면제 대상자에 대한 면제사유를 조례로써 명시함으로써 이들 대상자들이 해당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해당 시설이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있음
- 하남시의 경우 대관료나 이용료의 면제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15]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대관료와 이용료

제9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대강당, 소강당, 식당에 한해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16]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대관료 및 이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할 때
2.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서 사용할 때
3.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용할 때

4.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이 사용할 때
5. 사회복지시설에서 연간 1일 이내에 사용할 때
6.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에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때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3. 국가유공자

○ 오타 및 자구 수정

- 제6조의 계약갱신의 주체인 위탁자는 시장이므로 위탁자보다는 시장으로 표기해 알기 쉽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
- 개정일시 (2081.12.31.) 오류
-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등 당연직 위원 수정 필요

현행	개정
제4조(운영의 위탁) ④ 시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부시장, <u>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u> , 사회복지과장, 복지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④ 시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부시장, <u>경제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u> , 사회복지과장, 복지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u>위탁자가</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u>시장</u>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검토 자료)

- 제4조 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현황
- 노인복지관 위탁 및 재위탁 현황

□ 과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책무의 주체 수정

- 제3조 과천시의 책무에 있어 제1항의 주체는 과천시로, 제2항은 과천시장으로 혼재되어 있음
- 다양한 정책의 발굴 주체는 단체장의 책무이므로 제1항의 주체도 시장으로 수정해야 함

현행	개정
제3조(과천시의 책무) ① <u>과천시는</u>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과천시의 책무) ① <u>과천시장은</u>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u>위탁자가</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u>시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검토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과천시의 고령인구를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 교육 등의 사업 수행하는 한편 관련 노인 일자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

-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관련해 여주시, 안산시, 안성시, 시흥시 등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며 부천시, 김포시, 군포시 등에서는 노인복지증진 조례에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안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표 17] 여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수행
 2.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5. 노인 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표 18]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연령의 명시

- 현재 과천시 노인 일자리 지원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은 만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는 만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과천시의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자리 지원 대상 노인의 정의에 조례 지원 대상 연령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 오타 및 자구 수정

- 제1조 근거 상위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정확한 법명을 표기해야 함 (법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위법령 링크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

○ (자료 요청)

제4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계획

□ 과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조항 신설

- 「노인복지법」 제24조에는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과천시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경로당 회장에 대한 지원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사업으로 매달 15만원의 운영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 근거 없어 이를 조례에 반영 검토
- 다만 회장에게 한정되어 지급하도록 규정기보다는 수원시의 경우처럼 경로당 운영 관련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지도원의 활동비로 지급될 필요가 있음

[표 19]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검토

- 시설 등의 요건 부족으로 인해 등록을 하지 못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폭염이나 한파 등 최소한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안전점검 조항 신설 검토

- 최근 자치단체 조례에 경로당의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어 이에 과천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신설할 것을 검토

[표 20]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1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의 회장은 가스, 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조항 신설

-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은 각각 80세,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간병비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함

- 정보 이용이 쉽지 않은 고령 어르신 대상임을 감안하면 안성시와 같이 신청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보내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 21]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을 준용한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독거노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4. “독거노인 간병비”는 독거노인이 입원치료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5.~6. 〈삭제〉
7.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표 22]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신청안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만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조례 제명에 부합하는 노인복지 지원 내용 확대 필요

- 조례는 장수수당, 독거노인 간병비 및 장수축하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조례에 노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지원, 노인 사회참여 지원 등 노인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3] 서울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육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노인복지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

- 이천시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노인 복지 정책을 보면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경로우대, 저소득노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활동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표 24] 경기 이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5조(노인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밑반찬 무료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무료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고용 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경로우대) 시장은 노인들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저소득노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영정사진 제공
2. 장수노인부부 금혼식
3. 그 밖에 저소득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노인의 문화·체육활동 장려 등) ① 시장 및 노인관계기관은 문화·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보급
2.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문화·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에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과천시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제명 및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검토

- 조례의 목적은 고독사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조례의 내용은 75세 이상 3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장려금(매달 5만원 바우처)을 지급한다는 내용임
- 타자치단체 조례(울산 울주군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서울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노인 사회활동이라 함은 노인 일자리,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활동 지원은 노인 일자리나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일반적임
- 법제처는 조례 제명의 결정 원칙과 표현 방식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음¹⁾
- 따라서 조례 제명을 ‘저소득 노인의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조례 규정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목적 조항 등의 내용에 대한 변경 및 검토 필요

○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정의 규정 필요

- 사회활동 지원 혹은 사회활동 장려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회활동 지원과 사회활동 장려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문화활동 장려금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1) 2022년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022.9)

[표 25]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과천시(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문화활동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과 문화누리카드(문화활동 바우처)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게 사회활동 장려금을 바우처(카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표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지역봉사 활동과 일자리 창출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을 넓히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조항 신설**

-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이므로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 필요

○ **장 제목(총칙) 삭제**

- 조례의 장은 제1장 총칙 밖에 없으므로 장 제목 삭제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효행장려금 적정 지급 기준 검토

-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매달 5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 내 타자치단체와 비교해봤을 때 과천시의 효행장려금의 지급 요건은 낮고 금액은 높은 편임
- 과천시 효행 장려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그 대상자와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실제 대상자가 체감할수 있는 다른 방식의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표 27] 경기도 내 자치단체 효도 수당(효행 장려금) 비교

	대상	금액	참고
과천시	75세 이상 3대 구성, 3년 이상 거주	월 5만원	효행 장려금
수원시	80세 이상 3대 구성, 5년 이상 거주	6개월에 5만원	효도수당
화성시	80세 이상 3대 구성, 5년 이상 거주	분기별 10만원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분기별 20만원 지급 가능)	효도수당
고양시	4대 구성하고 3년 이상 거주	월 3만원	효도수당
시흥시	70세 이상 3대 5년 이상	월 3만원	효도수당
양주시	4대 이상 1년 거주	매년 50만원	효도수당
포천시	4대 이상 5년 거주	월 3만원	효도수당
의왕시	75세이상 4대 이상 1년 거주	매년 50만원	효행장려금
광명시	75세 이상 4대 이상 2년 이상	매년 50만원	효행장려금

○ (검토 자료)

- 효행 장려금 지원 현황

□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탈시설 지원 추가

- 현재 조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이 주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시설 퇴소자에 대한 주거지원, 정착금 등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 추가하는 방향 검토

[표 28]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중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제8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립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 퇴소 희망자에게 임시 및 중장기 주거지원 방안을 포함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긴급하게 시설에서 퇴소하려는 희망자에게 초기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脫)시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중증장애인 정의에서 상위법령 조문 명시

- 조례의 정의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시행령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상위법령 조문을 명기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 <u>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u> 」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 <u>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u> 」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검토

- 과천시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타자치단체의 경우 중증이 아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성남시 등)를 운영하고 있음
- 중증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직업생활에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두 개의 같은 조례 오류 수정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는 여전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두 개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오류이지만 신속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칫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볼 수 있어 큰 문제임

□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 공공재활치료시설 설치 vs 중증장애아동 재활 치료비 한정

- 장애아동의 재활 관련 별도 조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5곳이며 이중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명시한 조례는 과천시와 오산시 두 곳 뿐임.
- 특히 과천시는 중증장애아동으로 한정해 재활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음
- 반면 오산시의 경우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 과천시의 재활치료시설 상황을 검토하여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9] 장애아동 재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명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장애아동으로 용어 수정

- 우리나라 관련 법령(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에는 장애아동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명을 장애아에서 장애아동으로 변경 필요

○ (검토 자료)

-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현황
-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 현황

□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 최적 관람석 정의 수정

- 최적 관람석은 관람하기 좋은 위치 뿐만 아니라 이동과 대피가 용이한 좌석
- 따라서 제2조 정의에서 “최적 관람석이란” 쉽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현행	개정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u>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u>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u>쉽게 이동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u>

○ 민간시설의 경우 비용 보조 신설 검토

- 공공시설의 최적 관람석 의무 설치와 더불어 민간시설의 관람석 설치 유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 필요함
-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 검토

○ 용어 및 자구 수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보완
- 제4조는 해당 법령의 조문 명시
- 제7조의 경우 해당 내용의 주체가 없으므로 시장으로 주체를 명시

현행	개정
제4조 (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u>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보조) 시장 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검토 자료)

- 공공시설 최적 관람석 설치 현황(실태조사 자료)

□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 조례에 따른 사업 수행 여부 확인 필요

- 지원계획의 수립(제4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활동 여부 (장애인복지위원회 대체 가능, 제6조),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제7조) 등 여부를 확인 필요
- 현재 과천시의 발달장애 사업은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이행을 검토한 후 조례 개정 방향 마련 필요

○ 기본계획 수립 검토

- 세부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

○ 지원 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설립의 필요성 검토

○ (검토 자료)

-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및 이행 내역

[표 30]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대한 주요지표를 과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기본계획 별도 수립 및 위원회 자체 구성에 대한 검토

-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 부실한 내용이 되거나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위원회 역시 해당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수립 및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적인 고민을 담아낼 기본계획과 위원회 혹은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함

[표 31]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연도별 계획수립) ① 시장은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사회보장의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6. 행정·재정상의 자원조달 및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 검토

- 제6조의 조문제목은 연도별 계획 수립이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을 뿐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교육계획, 세부 시책, 인권침해 실태에 따른 대응 방안,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인권센터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기관 설치 검토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실태조사 및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설치 검토

[표 32]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결정·권고(개정 2020.4.6.)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 ③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분석결과에 관한 사항

○ (검토 자료)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여부
-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실태조사 실시 여부 등

3) 소결

□ 노인 분야 조례

- 과천시는 타자치단체에 비해 노인 분야 조례는 적지만 노인 대상 수당 지원 관련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편인 것이 특징으로 수당 지원 외에 노인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입법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노인 복지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는 조례보다는 개별 시설, 수당 지원 등 세분화된 지원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전체적인 계획 아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는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인복지증진 조례 전부 개정 혹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등 종합적인 지원틀을 마련하는 신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조례나 홀로 사는 노인이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등 관련 조례 입법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장애인 분야 조례

- 과천시는 타자치단체에 비해 장애인 분야 조례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많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과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검토할 필요 있음
- 신규 조례로는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해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 등에 대한 제정 검토

2. 과천시 문화체육 분야

1) 조례 현황

□ 문화체육 분야 조례는 20개 조례

- 과천시 문화체육 조례는 20개 조례임. 이중 문화 관련 조례는 16개이며, 체육 관련 조례는 4개 조례임

[표 33] 과천시 문화체육 분야 조례 현황

조례명	제·개정일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12월20일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년04월28일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21년09월28일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년04월28일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2021년09월28일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년10월14일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5년11월13일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2018년04월14일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21년04월30일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년04월19일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년12월27일
과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2020년09월29일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2년04월19일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2015년11월19일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2018년12월31일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12월27일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2022년12월23일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2023년04월12일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2020년11월04일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2020년09월11일

- 비교 유사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의왕시는 18개, 구리시 28개 조례
 - 의왕시는 문화 관련 조례는 10개 조례이고 체육 관련 조례는 8개 조례
 - 구리시는 문화 관련 조례는 19개 조례이고 체육 관련 조례는 9개 조례
- 과천시 조례 중에 의왕시와 구리시에 없는 조례는 모두 3개 조례
 -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임
- 의왕시와 구리시에 모두 있지만 과천시에 없는 조례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임

[표 34] 의왕시 및 구리시 문화체육 분야 조례 현황

의왕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구리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구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의왕시	구리시	과천시
	조례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사업 지원 조례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구리시 고구려 관련사업 지원 조례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구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구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관광 분야 조례 없음

- 과천시에는 직접적으로 관광 관련된 조례는 조례 한 건도 없는데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조례 검토 필요

□ 조례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과

- 과천시에서 문화체육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과임

- 행정안전국에는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등 7개과가 있음
- 의왕시의 경우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에서 각각 문화와 체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리시도 복지문화국 내 문화예술과와 평생학습과에서 각각 문화와 체육을 담당하고 있음

2) 조례 분석 및 개정 방향

□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 조항 신설

- 과천문화재단은 과천시 출연기관으로 시와 의회로부터 사업의 집행과 예결산을 감독과 감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같은 출연기관 조례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재단이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의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음
- 하지만 과천문화재단의 경우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 있음

[표 35]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표 36]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정관)

②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등의 제출) ①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매사업 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검사, 감사) ①시장이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 요청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의회의 견제 장치 강화 검토

- 경기 안산시의 경우 조례에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에 대한 의회 보고 및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표 37]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①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경기 성남시의 경우 그 외에 정관 제정 또는 개정시 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가 재단에 대해 상시 보고·감사·검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과천시의 경우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정관의 변경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표 38]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정관)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등)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를 요청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현행 조례에 과천문화재단이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등의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회가 필요할 때에는 보고, 검사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문화재단에 대해 의회가 감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재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은 과천문화재단을 비롯해 과천시애향장학회,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등 3개 기관으로 3개 기관에 관련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존치 필요성 검토

- 과천축제기금은 2001년부터 3년간 150억원을 조성해 2003년부터 과천축제(9월 마지막주 3일간)를 지원하고 있는데 5년의 존속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 2023년 과천축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도비 8천만원, 시비 11억6천만원, 기금에서 1억 6천만원 편성되어 있음
- 안산시, 하남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해 문화예술활동, 지방문화시설 개·보수,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 연구 활동 등에 관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저금리 기초,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소규모 기금의 경우 적극적인 통합 및 폐지 유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기금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폐지하는 자치단체(성남시, 구리시)도 있음
-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검토 필요

[표 3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문화재 전승활동비 대상 및 지급 기준 검토

-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에 무형문화재 및 소속 회원에 대한 전승활동비·특별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의 전승활동비 지급 기준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유자에 대해서는 2명 이내 120만원 이하, 도 지정문화재 보유자에 대해서는 5명 이내 월 8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보유자에게 전승 활동비로 한해 최대 총 7,680만원 지원이 가능함
- 하지만 2023년 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소리 보존 및 전승 지원 사업’에서 전승활동비 예산은 모두 8,320만원으로 기존 보유자 1명과 전수조교 1명 외에 경기소리 이수자에게 70만원씩 10명,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보유자가 아닌 이수자에게 규정된 금액 이상을 지

원하는 것은 법규 위반으로 보임

- 전승활동비 및 장학금 등의 지급 현황을 검토하여 이수자 등 지원 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급 대상에 대한 조례 규정을 이수자 혹은 단체 회원 등으로 보다 확대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0]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보조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문화재에 보조할 수 있다.

1~3(생략)

4. 무형문화재 및 소속 회원에 대한 전승활동비·특별지원금

[그림 6] 전승활동비 등 지급 기준

[별표 3]

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제5제1항 관련)

○ 전승활동비

(단위: 천원)

분야별	대 상	인 원	지 원 규 모	비 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유자	2명 이내	월 1,200 이하	
도 지정 문화재	보유자	5명 이내	월 800 이하	

○ 공연수당 : 1회 200만원 이내

〈출처: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자구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보완

현행	개정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이하 ”시“ 라 한다) 무형문화재” (이하 “무형문화재” 라 한다)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중 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개인 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이하 ”시“ 라 한다) 무형문화재” (이하 “무형문화재” 라 한다)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중 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보유자 를 말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제12조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검토 자료)

- 조례 적용대상인 무형문화재 단체 및 개인 현황
-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활동 지원 성과

□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검토 필요

- 지금 조례에 따르면 예총 및 문화예술 법인과 단체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과천시 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현재 과천 예총 및 소속협회 정

기행사 지원으로 2억3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소속 단체당 1~2개의 행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충을 제외한 다른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움

- 과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므로 예충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현행 조례 제3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예충을 제외하고 20명 이상, 회원 70% 이상이 과천시 거주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한정적일 것으로 보임
- 현재 경기도 내 타자치단체 관련 조례 중 법인이나 단체 기준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1]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과천시회(이하 "예충"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법인·단체 구성 요건) 법인·단체의 장은 과천시 거주자이어야 하며 단체별 총 회원은 20명 이상으로 회원의 70% 이상이 과천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 상위법령 근거 조항 명시

- 조례의 목적 조항에 근거 조항 명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 과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과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본 조례의 필요성 검토

-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로 한정되어 있고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역시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
- 과천시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나 지원 환경, 국내외 교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내용 규정은 부재함

○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와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과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통합 검토

- 지역문화 진흥, 문화예술인 지원, 축제 및 행사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필요

-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증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검토자료)

- 2023년 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나타난 시비 사업은 지역예술단체 창작지원 사업(1억5천만원), 과천문화재단의 기획 공연 및 전시 사업(8억 5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4천5백만원) 등 10억원임
- 조례 제정에 규정된 실제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검토

[표 42]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복지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 노인 체육 진흥 지원 내용 포함 검토

- 고령인구 증가로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노인체육 진흥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음
- 경기도 기초단체 중 남양주시, 안성시, 의정부시, 용인시, 부천시, 성남시, 광명시 등이 노인체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체육진흥 조례에 포함하고 있음
- 과천시도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체육진흥 조례 안에 노인체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3]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15조(노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용어 정의 근거 및 내용 규정 필요

- 조례 제2조 정의에 있어 “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등을 관련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의 정의 조항을 나열하고 있음
- 하지만 어느 용어가 해당 법령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를 각각의 법령에 따른 용어로 풀어낼 필요가 있음
- 또한 스포츠클럽의 경우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어 지난 2021년 4월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음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 <u>체육</u> ”, “ <u>전문체육</u> ”, “ <u>생활체육</u> ”, “ <u>체육지도자</u> ”, “ <u>생활체육지도자</u> ”, “ <u>체육단체</u> ”, “ <u>체육동호인조직</u> ”, “ <u>스포츠클럽</u> ”, “ <u>학교스포츠클럽</u> ” 및 “ <u>학교운동부</u> ”의 뜻은 「 <u>국민체육진흥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2조, 「 <u>생활체육진흥법</u> 」 제2조 및 「 <u>학교체육진흥법</u> 」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체육</u> ”이란 <u>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u> 2. “ <u>전문체육</u> ”이란 <u>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u> 3. “ <u>생활체육</u> ”이란 <u>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u> 4. “ <u>체육지도자</u> ”란 <u>법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u> 을 말한다.

	5. “생활체육지도자”란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8.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10.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	---

○ (검토자료)

-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체육단체 등에 지원 현황
- 지원 사업 성격에 대한 검토 필요

□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내용 신설

-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에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 신설

○ 조문 오류 수정

- 제5조 장애인체육시설 조문은 제2조7호의 체육시설의 정의와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또한 다음 2항이 없음에도 제1항으로 표기되는 오류

현행	개정
제5조(장애인 체육시설)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제5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현행	개정
있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추가 신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제00조 (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 (검토 자료)

- 장애인 체육동호회, 장애인 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선수 및 지도자 지원, 체육행사 및 교류 등 예산 지원 현황

□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조례로 개정 검토

- 현행 조례가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이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 조례로 확대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평가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단순히 문화 공간 및 시설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 진흥 계획 수립을 비롯해 생활문화단체의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전문인력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에 관한 내용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생활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소결

- 과천시의 문화체육 분야 조례는 일반적인 조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과천시 관광자원(청계산, 관악산, 박 물관 등) 활용을 위한 관광진흥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지원 필요성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계산, 관악산, 박물관, 서울랜드 등 관광자원 활용 필요
 - 조례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지원 필요
- 또한 과천시는 체육시설이 경기도 내 기초단체 중 일곱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학교체육 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혹은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입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많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44] 경기도 내 공공체육시설 현황 (2021년말 기준)

지 역	시 설 수(설 치 유 형 별)								
	계 (개소)	체육 공원	둔치	마을 공터	아파트 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 공원	기타
계	3,259	122	118	447	17	196	222	1,611	526
고양시	370	10	2	9	-	-	64	236	49
안산시	276	3	0	1	3	13	16	207	33
남양주시	272	6	3	37	1	0	0	202	23
성남시	258	4	27	4	1	0	7	183	32
부천시	219	1	0	0	0	7	16	166	29
용인시	212	3	1	10	0	14	21	154	9
의정부시	200	2	38	9	4	17	2	114	14
수원시	164	4	0	0	0	34	18	104	4
김포시	128	17	0	3	0	5	3	22	78
군포시	115	5	0	95	0	5	10	0	0
하남시	115	5	0	95	0	5	10	0	0
동두천시	104	5	5	29	5	7	3	32	18
의왕시	101	6	0	0	0	0	0	0	95

지 역	시 설 수(설 치 유 형 별)								
	계 (개소)	체육 공원	둔치	마을 공터	아파트 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 공원	기타
광주시	92	0	17	6	0	5	16	38	10
오산시	92	2	0	0	0	1	5	84	0
평택시	80	1	3	5	2	45	5	15	4
화성시	78	1	4	46	0	0	0	9	18
안성시	42	3	3	3	0	4	3	19	7
안양시	39	11	1	1	0	0	0	7	19
가평군	36	5	1	13	0	0	0	1	16
여주시	33	7	8	17	0	0	0	1	0
광명시	32	2	1	6	0	10	11	2	0
양평군	32	7	0	21	0	0	0	2	2
양주시	27	0	1	3	1	0	0	2	20
과천시	25	0	0	13	0	9	0	1	2
구리시	22	2	2	1	0	3	0	4	10
연천군	22	1	0	8	0	0	0	2	11
시흥시	21	0	1	6	0	0	9	1	4
파주시	19	3	0	6	0	4	1	2	3
이천시	17	3	0	0	0	7	0	0	7
포천시	16	3	0	0	0	1	2	1	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2021년말 기준)〉

3. 도시정책 및 도시정비 분야

1) 조례 현황

□ 도시정책 및 도시정비 분야

- 과천시 도시 정책 및 도시 정비 분야 조례는 제18편 도시정책(6개), 제20편 도시정비(7개), 제24편 공원녹지(10개)를 중심으로 조례를 살펴봄

[표 45] 과천시 도시정책 및 도시정비 분야 조례 현황

조례명	소관부서	제·개정일
과천시 경관 조례	도시정책과	2017년12월29일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도시정책과	2017년06월13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정책과	2020년11월04일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도시정책과	2023년04월12일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도시정책과	2021년04월30일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도시정책과	2020년03월11일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도시정비과	2020년12월30일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도시정비과	2023년04월12일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정비과	2017년12월29일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도시정비과	2019년07월05일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시정비과	2023년04월12일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도시정비과	2022년08월12일
과천시 주택 조례	도시정비과	2022년09월29일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과	2021년06월23일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공원녹지과	2022년08월12일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	공원녹지과	2013년12월30일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공원녹지과	2020년05월06일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과	2018년04월14일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공원녹지과	2021년06월23일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공원녹지과	2021년12월27일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과	2020년03월11일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과	2021년02월17일
과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공원녹지과	2013년10월29일

- 비교 유사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의왕시는 17개, 구리시 23개 조례이며 의왕시와 구리시에 모두 있지만 과천시에 없는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임

- 다만, 과천시 주택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공동주택 관리 조례임

○ 의왕시와 구리시에는 없지만 과천시에 있는 조례는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임

[표 46] 의왕시 및 구리시 도시 정책 및 도시 정비 분야 조례 현황

의왕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
의왕시 경관 조례	구리시 경관 조례	○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구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구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의왕시 주택 조례	구리시 주택 조례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의왕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	

□ 조례 담당 부서는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 과천시에서 도시정책과 도시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건설도시국으로 건설도시국에는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7개 과가 있음

- 분석 대상 조례는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임

○ 의왕시의 경우 도시안전국에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가 있으며 공원녹지과는 경제환경국에 소속되어있음

○ 구리시의 경우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에 공원녹지과가 있음

2) 조례 분석 및 개정 방향

□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 공공디자인 전담 조직 및 인력의 부재

-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 전담부서를 설립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 과천시 조직도상에 나타난 공공디자인 담당 인력을 보면 도시정책과의 주무관 1인이 공공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이나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명칭 변경

-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서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으로 수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으로 되어있는 제4조 규정을 진흥계획(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수정 필요

[표 4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통합 입법 가능성 검토

- 같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을 상위법령으로 근거하고 있는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 타자치단체들도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에 규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도시숲 관련 조례 통합 검토

○ 현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천시 조례는 「과천시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와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므로 「과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할 필요 있음

○ 현재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위촉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도시숲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의무와 그에 따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 또한 「도시숲법」 제12조에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가로수의 심의 및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통합 입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과천시 주택 조례 개정 검토

○ 조례 내용과 부합하는 조례명 변경 필요

-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은 기존 「주택법」에 담고 있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2016년 8월 시행된 법률임
- 현재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11월에 제정된 조례로 기존 「주택법」을 근거 법령으로 입법되어 조례명도 그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근거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인 만큼 이에 따른 조례제명 변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 기준 등 삭제 검토

- 제4조 방화구획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입법 검토

- 과천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비율이 매우 큰 상황이며, 현재 공동주택의 분쟁 중 큰 문제 중 하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임
- 현재 법적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층간 소음의 사전 예방과 입주자간의 자율적인 갈등 해결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더 나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도움될 것임
-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검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입법 검토

-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2017년 제정되어있음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등의 빈집 실태조사 실시, 빈집정비사업 시행, 사업시행계획 인가, 주민합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과천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모든 자치단체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
- 과천시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실태조사 등 빈집 정비사업을 비롯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입법할 필요 있음

□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 검토

-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주공아파트 4,5단지 재건축 사업 등으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상권이 쇠퇴하고 있어 도시재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쇠퇴해가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관련 조례를 지자체에서 입법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자치단체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조례는 원도심 상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22년 12월 서울 강서구가 원도심 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과 지원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강서구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원도심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지원, 개발사업 지원, 개발사업 지원, 원도심 활성화 전담 조직(원도심활성화추진단), 원도심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두고 있음
-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서구는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민관합동 원도심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례에 따른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48] 원도심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제·개정일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2-28	2022-12-28
충북 청주시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2022-05-13	2022-05-13
충남 아산시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2019-05-07	2022-08-16
충남 아산시	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2019-05-07	2019-05-07
전남 목포시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2016-12-19	2023-05-30
전북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	2016-07-08	2022-10-21
전남 여수시	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2015-01-01	2018-12-10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2014-03-13	2019-08-01
전북 임실군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2010-04-07	2016-05-13
강원 원주시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2009-12-31	2021-12-31
전북 군산시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2007-03-27	2014-12-16
전북 익산시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2006-01-09	2022-10-14

3) 소결

- 과천시의 도시정책 및 도시정비 분야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조례로 입법해야할 일반적인 조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디자인 관련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아 과천시가 도시디자인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천시가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동주택과 관련한 입법 및 도시 재생 등에 관한 입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4. 폐지 검토 조례

□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학금액도 공납금정액으로 하고 있어 수업료를 지급해주는 내용임
- 하지만 2021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으로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이 사라져 조례의 실효성도 없어졌으므로 관련 조례 폐지

□ 과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1999년 개정되기 전의 제2조제1항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조례는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 필요

□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현행 조례는 1998년에 제정되어 2013년에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로 부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조례는 당시 IMF 금융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학동안 학비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실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 시대적 흐름과는 부합하지 않는 조례명이며 조문의 내용 역시 이미 삭제된 조례(「과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없는 조례임

- 현재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현행 조례는 폐지하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맞는 조례로 새롭게 제정될 필요가 있음
- 현재 20개 지자체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관련 조례에 연수 대상자 선발, 실비지급 기준,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과천시도 「과천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가칭)」 입법 검토 필요

[그림 7]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사업 내용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페이지)		단위사업	시민중심의 시장운영
		세부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동 계 목	(301-11)행사실비지원금 (301-14)기타보상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 사업량 : 연간 200명(학기 별 각 100명)				
○ 사업내용 : 방학기간 중 관내 거주 대학생에게 시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제공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본예산 (A)	2023년 본예산(안) (B)	증감액 (B-A)	비고
계	168,795	175,850	7,055	연례반복
시 비	168,795	175,850	7,055	

□ 예산반영 세부계획				
○ 사업계획				
- 부업대학생 운영계획 수립 : 2022년 11월중				
- 부업대학생 선발 및 부서 배치 : 2023년 동계 및 하계 방학 중				
○ 사업비 산출내역				
- 기본급여 : 34,000원 × 50명 × 20일 × 4회 = 136,000천원(2023년 과천시 생활임금 적용)				
-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 34,000원 × 50명 × 5일 × 4회 = 34,000천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170,000,000원 × 2.5% = 4,250천원				
- 대학생 간담회 운영 : 8,000원 × 50명 × 4회 = 1,600천원				
○ 필요성				
- 과천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 대한 시정 홍보 및 공공부분의 참여 기회의 확대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 및 일자리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증대				

□ 과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현행 조례는 1986년에 제정되어 2013년에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된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로 목적, 적용 범위, 일비, 여비 등 4개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많아지면서 유사 중복 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관리를 위한 조례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조례는 중복된 조례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하고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모두 109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는 1986년에 제정되어 1998년 용어 정비, 2013년에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로 목적, 시기, 문장 사용, 휘장 수여 등의 5개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자치단체별로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등 지역의 다양한 상징물을 새롭게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시 홈페이지를 보면 과천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심볼마크, BI, 마스코트, 자연상징물 등이 있음
- 따라서 시기, 문장, 휘장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 조례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조례이므로 폐지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조례를 입법할 필요

요가 있음

- 타자치단체의 경우 시기, 휘장, 브랜드, 글꼴로고, 캐릭터, 자연상징물 등의 관리와 상징물 관련 사업,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과천시도 관련 입법 검토 필요

□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현행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입법되어 있으며 제26조에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을 두고 있어 현재 조례를 개별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과태료 관련 조례를 별도로 입법한 의회는 경기도에서 유일함
- 따라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과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 있음

[표 49]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과태료) ①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이의신청 등은 법 제34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따른다.

③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의회 운영 관련 조례 입법 검토

□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 정책지원관 설치 근거 규정 필요

-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려면 조례에 도입 근거를 규정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이 직무 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50] 지방자치법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51]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정책지원관 조항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현재 과천시의회에는 정책지원관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없고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정책지원관의 분장 사무와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근거해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셈이어서 조례 입법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표 52]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현재 경기도에서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를 입법하지 않은 의회는 과천시의회가 유일함

[표 53] 경기도 내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 현황

자치단체명	조례명
경기도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의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가평군의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의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의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의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의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의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의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의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자치단체명	조례명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년 9월 현재

○ 근거 조례 입법 방식 검토

- 관련 조례에 반드시 규정해야 할 내용은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배치, 직무 범위 등이며 의회에 따라 교육 훈련, 직무수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곳도 있음
-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조례를 입법하는 방식으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과 개별 조례로 입법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련한 개별 조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2023년 9월

현재 경기도에서 3곳(가평군의의회, 성남시의회, 수원시의회)이며 전국에서는 19곳으로 나타났음

-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배치, 세부 직무범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근무실적 평가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입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지원관의 배치 문제

-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현재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되어 있음
- 전문위원의 직급이 5급 혹은 6급이고, 정책지원관은 7급으로 채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고 해도 전문위원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역할 분담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아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정책지원관은 포천시의회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속의 별도의 팀 혹은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림 8] 포천시의회 조직도



〈출처 : 포천시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pocheon.go.kr/>)〉

○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 시행령에 따른 직무의 세부사항과 관련해
-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등이 일반적이며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의원의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음
- 조례에 규정된 직무 외에 다른 사적인 사무 처리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을 둔 지방의회(광명시 등)도 있으나 사적인 사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갈등이 발생할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정책지원관 업무 지휘 체계 관련

- 정책지원관의 업무의 지휘 체계와 관련해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기구의 장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근무실적 평가 역시 사무과장이 지휘위원의 평가를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해 정책지원관은 사무과장이 아닌 의원의 지원 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규정 마련

- 정책지원관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내용을 포괄하는 조례명으로 변경 검토

- 현재 조례는 과천시의회 회의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규정된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조례명을 지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천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혹은 「과천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의원 의안 발의 요건 명시 필요

- 의안의 발의 관련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과천시의회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조례가 아닌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 54] 지방자치법 중 의안 발의 관련 조항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표 55]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중 의안 발의 조항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IV. 자치법규 심의 강화 방안

1. 조례 입법 절차와 조례 심의

□ 집행부의 조례 입법 절차²⁾

- (조례안의 입법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조례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입법절차를 주관
- (입법계획 수립)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입법계획을 수립하며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규칙의 제·개정 여부를 판단하여 같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입법의 필요성(배경, 현황 및 문제점),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을 포함
 -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조례 또는 규칙의 형식이 아닌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이나 행정상·예산상의 조치로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관계기관 협의) 필요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협의를 필요하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개별법령에 근거한 부패영향평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법」) 등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평가를 실시

2) 2022년 자치법규 업무매뉴얼(2022년판) 재가공

- **(규제심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포함)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심의회 이전에 규제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법제담당부서 심사 전에 규제심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청회)**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사회 이슈화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청회 공고, 참석자 등 관련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함
-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20일 이상 입법예고 실시
 -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에 참고하도록 당해 안전에 첨부함.
- **(법제담당부서 심사)** 입안부서는 부서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조정한 후 자치법규안을 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조례안 확정)** 입안부서는 법제담당부서의 심사안을 토대로 자치법규안을 수정·보완하여 심의안을 작성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함

- **(조례안 공고·지방의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함
-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의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이송·보고)**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음
- **(재의결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해당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됨
-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

□ 의회 내 조례안 심의 및 의결

- **(조례안의 접수)** 조례안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의회 규칙에 따라 의회가 회기 중인 때는 물론 폐회 중에도 제출 가능하며 의장이 의안의 접수권을 가지며 의회 사무국에서 접수
- **(조례안의 위원회 회부)**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함
-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회에 조례안 상정하며 취지설명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기타 참고자료 위원에게 배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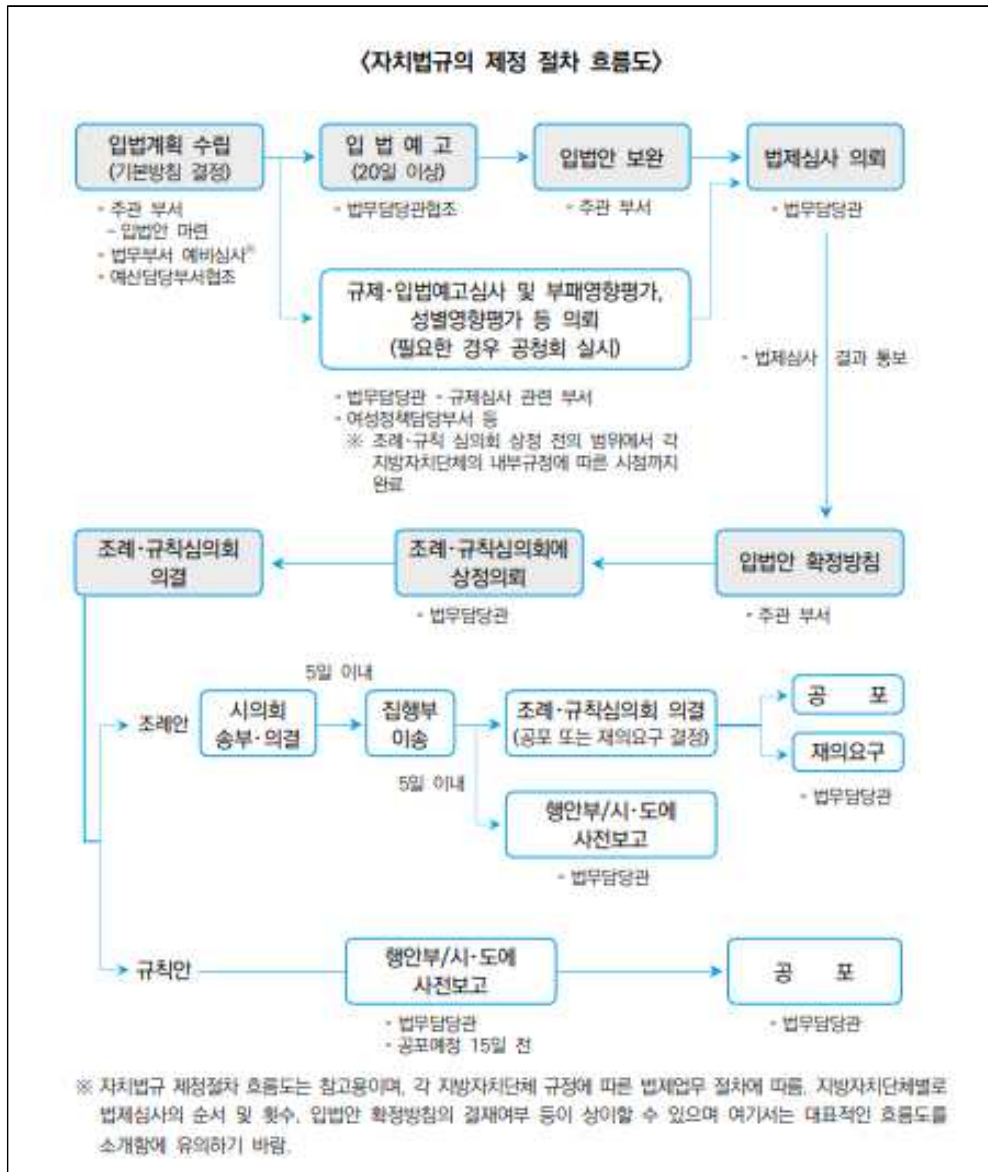
-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방의회에는 전문위원을 두어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의 질의와 토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지자체 장 또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여러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으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
- **(위원회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표결방법으로는 축조심사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이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표결 결과 위원회를 통과하면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됨
- **(본회의 심의 및 조례안 이송)** 의장은 의안이 본회의에 의제되기 전에 심사보고서를 의원에게 배부하며 본회의의 개시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 등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
- **(본회의 심의)** 의장은 의안이 본회의에 의제되기 전에 심사보고서를 의원에게 배부하며 본회의 보고, 질의 및 토론,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집행부에 이송하게 됨

□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것들

- 집행부의 입법절차에서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무엇인지, 이를 조례안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
-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집행부 입법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앞선 집행부 입법 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무엇인지, 조례비용추계

등은 적절한지를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림 9] 자치법규의 제정 절차 흐름도



〈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 자치법규 심의 강화 방안 제안

1) 과천시 재정 사업 집행에 대한 근거 파악

□ 재정민주주의와 추진근거로서의 입법

- 재정민주주의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입법과정을 통해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 지자체의 재정사업 역시 추진근거로써 법령이나 조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민주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자치사무 가운데 예산안의 의회 제출시 첨부하는 세부사업설명자료에서 해당 사무에 관해 규율하는 조례나 법령의 근거를 적시하는 것이 필요

□ 사업설명서를 통한 법령 및 자치법규 근거 파악 불가

- 예산의 내용과 예산안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제44조의 2에서 12가지의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사업별 예산 편성액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있어 매우 필수적인 자료로 평가됨.
- 과천시 2023년 주요사업 설명서는 사업개요, 예산총괄표, 예산반영계획, 기대효과 등 간략한 개요만 있을 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 파악이 어려움
- 사업 집행의 근거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이 부재해 개별 사업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함
- 전년도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이나 추진실적 없으며 산출 내역의 경우 최소한의 세부 산출 기준도 나와있지 않음

[그림 10] 과천시 주요사업설명서 사례

노인일자리 지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단위사업 노인복지증진 세부사업 노인일자리 지원(국비) 동 계 목 (307-05) 민간위탁금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424명
- 사업내용 : 관내 노인 일자리 제공 사업(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본예산 (A)	2023년 본예산(안) (B)	증감액 (B-A)	비고
계	2,129,979	2,048,316	△81,663	연례반복
국 비	1,064,990	1,024,158	△40,832	
도 비	159,748	153,624	△6,124	
시 비	905,241	870,534	△34,707	

□ 예산반영 세부계획

- 사업계획
 - 사업계획수립, 사업홍보 및 대상자 모집 등 : 2023년 2월까지
 - 수요처 배치 및 활동, 보수교육, 간담회 등 : 연중
 - 사업 평가, 만족도 조사 등 : 2023. 11월 ~ 12월
- 사업비 산출내역
 - 공 익 형 : 626,850천원(돌봄도시락배달, 복지시설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1,237,236천원(온종일돌봄시설지원, 보육시설도우미 등)
 - 시 장 형 : 184,230천원(카페 3개소(카페나루, 페이지카페, 지식정보타운 업무시설 내 카페) 및 정보과학도서관 식당 1개소 등)
- 필요성
 -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도모

□ 기대효과

-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 창출의 기회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

□ 사업 담당자

국	부서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최 준 영 (2210)	김 수 현 (2261)	김 은 지 (2263)

〈출처: 과천시 2023년 주요사업설명서〉

□ 근거 법령 명시 등 예산 사업설명서의 개선 필요

- 경기도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사업근거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대한 명시를 통해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그림 11]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독서교육	세부사업	학교도서관운영
세세부사업		1.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예산서: 799쪽)					

□ 예산 총괄표

1) 기관별 구분

(단위: 천원)

기관	2021년		2022년 본예산(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A)	최종예산			
직속기관	9,592	9,592	11,097	1,505	16%

※ 증감 사유

- 효율적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학부모 연수 운영 확대

2) 재원 구분

(단위: 천원)

자체예산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잔여금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기타	합계
11,097	0	0	0	0	0	0	11,097

□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두자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여부
반영	비대상	비대상

□ 최근 3년간 집행 현황

(2021. 10. 15.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예산잔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본예산	추경예산							
2019	10,838	0	0	0	10,838	10,838	100%	0	0
2020	10,838	0	0	0	10,838	10,838	100%	0	0
2021	9,592	0	0	0	9,592	9,592	100%	0	0

□ 사업 담당자

과	사서팀장	실무자
총무과	주무관 최혜숙 (882-1066)	주무관 최혜숙 (882-1066)
		주무관 소광현 (882-1066)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교육지원청-학교도서관이 상호 연계하여 학교도서관 지원 역할 강화
- 교육도서관으로서 학교 독서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독서강좌 실시

2) 사업근거

- 「도서관법」 제28조(업무)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4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제15조(학교의 독서진흥)

3) 사업내용

사업명(세부항목)	사업설명																				
학교도서관현장지원	◦ 어주·이천 지역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위한 출장 및 협의회 운영 - 시기: 2022년 1월~12월 - 대상: 어주·이천 초·중·고 - 대상사업: 도서관과함께행복한책읽기, 세네기학부모독서아카데미, 청소년 도서관교육, 우리반 한책읽기, 독서진흥 지원 프로그램 등																				
도서관과함께행복한책읽기	◦ 학생들의 독서습관 함양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시기: 2022년 4월~7월 - 대상: 어주·이천 초·중·고 - 내용: 교육과정 연계, 진로 독서 등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단위: 교, 천원) <table><tr><th>연도</th><th>지원교수</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비고</th></tr><tr><td>2019</td><td>15</td><td>8,300</td><td>8,300</td><td></td></tr><tr><td>2020</td><td>19</td><td>8,300</td><td>8,300</td><td></td></tr><tr><td>2021</td><td>11</td><td>8,355</td><td>8,355</td><td></td></tr></table>	연도	지원교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9	15	8,300	8,300		2020	19	8,300	8,300		2021	11	8,355	8,355	
연도	지원교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9	15	8,300	8,300																		
2020	19	8,300	8,300																		
2021	11	8,355	8,355																		
세네기학부모독서아카데미	◦ 자녀의 독서지도 및 부모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 운영 - 시기: 2022년 4월~5월 - 대상: 어주·이천 초·중·고 학부모 - 내용: 자녀 독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6회 운영 - 추진실적 (단위: 회, 천원) <table><tr><th>연도</th><th>운영횟수</th><th>예산액</th><th>집행액</th></tr><tr><td>2019</td><td>6</td><td>1,658</td><td>1,658</td></tr><tr><td>2020</td><td>6</td><td>1,728</td><td>1,728</td></tr><tr><td>2021</td><td>3</td><td>940</td><td>940</td></tr></table>	연도	운영횟수	예산액	집행액	2019	6	1,658	1,658	2020	6	1,728	1,728	2021	3	940	940				
연도	운영횟수	예산액	집행액																		
2019	6	1,658	1,658																		
2020	6	1,728	1,728																		
2021	3	940	940																		

□ 2022년 본예산 편성액: 11,097천원

○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세부항목)	2022년 본예산(A)	2021년 본예산(B)	증감 (A-B)
○ 학교도서관현장지원	297	297	0
- 출장여비 27,000원×1명×11회 -	297	297	0
○ 도서관과함께행복한책읽기	9,020	8,355	665
- 행사용품및소모품 60,000원×11개교 -	660	375	285
- 강사수당(기본) 130,000원×11개교×4회 -	5,720	5,460	260
- 강사수당(초과) 60,000원×11개교×4회 -	2,640	2,520	120
○ 세네기학부모독서아카데미	1,780	940	840
- 행사용품및소모품 100,000원×1회 -	100	100	0
- 강사수당(기본) 130,000원×1명×6회×1시간 -	780	390	390
- 강사수당(초과) 60,000원×1명×6회×1시간 -	360	180	180
- 원고료 5,000원×1명×6회×9매×2시간 -	540	270	270

〈출처 : 경기도의회〉

- 예산의 편성의 근거가 되는 산출 내역을 통해 세부사업 내역 및 사업의 규모, 예산의 적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할 것임

2) 의안 비용추계 제도 활용

□ 의안 비용 추계 실시 여부 확인

- 「지방자치법」 제7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음

[표 56] 지방자치법에서 의안 비용추계 관련 조항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재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는 작성 대상과 작성방법,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 양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집행부의 비용 추계가 현행 조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57]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 (비용추계서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주민 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과천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비용추계 산식 및 세부사업비 등 비용추계 산출 방식을 강제할 필요 있음

-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에 공개된 검토보고서의 붙임 자료 ‘부산중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집행부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했으며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인 콜택시와 셔틀버스로 나누어 비용추계했고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결과, 재원조달 방안, 부대의견 등이 기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용추계 산식과 세부사업비, 비용추계의 연간 상세 내역 등이 작성되어 있음

[그림 12] 부산 중구 조례안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콜택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동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안 제3조)에 대하여,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안 제5조) 하고 있어, 택시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1) 동 사업은 구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전제로 추계함
- 2)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을 추계기간으로 정함
- 3) 2022년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용을 포함하며, 5월부터 시행으로 가정
- 4) 사업 대상자는 중구의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만80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들 대상자에 대하여 택시 이용 요금을 월1만원까지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구분	세입						
	소계(a)	0	0	0	0	0	0
세출	• 택시이용비용	127	206	222	240	259	1,054
	• 택시콜비용	51	83	89	96	104	423
	• 시스템구축비용	40	0	0	0	0	40
	소계(b)	218	289	311	336	363	1,517
□ 총 비용(a-b)		-218	-289	-311	-336	-363	-1,51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일반회계						
구비	일반회계	218	289	311	336	363	1,517
합계		218	289	311	336	363	1,517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택시이용비용¹⁾(지원인원²⁾×10천원×12개월) +
 택시콜비용³⁾(지원인원×800원×5회×12개월)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⁴⁾

- 주 : 1) 대상자가 할인받는 금액(추후 업체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구에서 업체로 지급)
 2) 2021.7.31.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통계청 인구추계를 적용하여 추정
 3) 교통약자 콜택시 응답률 상승,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봉사료(택시 기사에게 지급)
 4) 최초 시행 시(2022년) 구축

〈출처 : 경기도의회 회의록〉

- 또한 하남시의회에 제출된 하남시 예술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 발생 요인이 되는 조문, 추계의 전제, 도비와 시비 분담 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음

[그림 13] 하남시의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 제4조부터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재원은 경기도와 하남시가 협력하여 공동부담한다.
- 기회소득 지급 금액은 예술인 1인당 150만원으로 한다.
-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관내 예술인은 2023년 약 350명으로 하고, 매년 5%씩 증가
 - 관내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 649명 중 지급 조건을 충족(중위소득 120%이하)하는 예술인을 약 350명이라 추정
- ※ 경기도 사례 조사 결과, 예술활동증명유효자의 약 50%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525	550.5	577.5	606	636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	도비	262.5	275.25	288.75	303	318
	시비	262.5	275.25	288.75	303	318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1회 추경)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도비 210,000천원 / 시비 210,000천원
- 지원금액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은 3회 추경 반영 예정
 - 추가 예산 : 도비 52,500천원 / 시비 52,500천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업							
세 출							
예술인 기획소득		525,000	550,500	577,500	606,000	636,000	2,89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62,500	275,250	288,750	303,000	318,000	1,447,500
	보조금	262,500	275,250	288,750	303,000	318,000	1,447,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2,500	275,250	288,750	303,000	318,000	1,447,500
	지방세	262,500	275,250	288,750	303,000	318,000	1,447,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출처 : 하남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 비용추계를 생략할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그 사유가
적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경우의 사유로 사업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

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조례안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어떤 근거로 비용추계 생략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 있음

[표 58]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중 비용 추계 생략 사유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자원조달 방안 명시 등 개정 필요

-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에 따르면 비용의 추계 및 자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과천시 조례는 자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에 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이 필요함

[표 59]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중 자원조달 방안 작성 관련

제5조(자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자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활용

□ 집행부 제출 조례안의 기재 내역 확인

- 집행부 제출하는 조례안이 각각의 절차에 맞게 입법되고 제출되었는지 1차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입법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입법예고 실시와 비용추계서 작성,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비롯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와 같은 절차들의 실시 및 반영 여부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임

[그림 14] 성남시 조례안 사례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048
----------	------

제출년월일 : 2023. 1. .
제 출 자 : 성 남 시 장

□ 제 정 이 유

- 교통약자인 어르신들(70세 이상)의 이동권 보장 및 여가·문화·사회 활동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대중교통 이용 촉진으로 교통혼잡 비용 절감, 대기오염 문제 등 기후 위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가. 대중교통비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안 제4조)
- 라. 지원체계 구축 및 이용방법(안 제5조 ~ 제6조)
- 마. 지원중단(안 제7조)
- 바. 사후관리(안 제8조)

□ 제정조 례 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 관련사업계획서: 붙임(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불입(비용추계)

□ 성별영향평가결과: 불입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결과: 불입 (원안동의)

□ 규제심사검토결과: 불입 (원안동의)

□ 입법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2022. 12. 2. ~ 12. 12.(10일간)
- 의견제출자(부서): 성남시의회 김우순전문의원(6건, 구두 제출)
- 의견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적용
 - 불필요한 준용 법·조례 삭제
 - 조례 효력 발생일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 요청
- 검토결과: 반영 4, 미반영 2건

의견제출 부서	입법예고 내용	의견	검토결과
성남시의회 (김우순 전문의원)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이해가 어려운 조문 수정 요청	반영 ⇒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생략>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해가 어려운 조문 수정 요청	반영 ⇒ 제6조(이용방법) <생략>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출처 :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한 입법 심의 기반 확보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 절차대로 입법되고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과천시 검토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관계법령, 예산조치), 검토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타자치단체 조례 비교나 비용 추계 검토 등이 검토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 있음

[그림 15] 서대문구의회 검토보고서 사례

V. 검토 의견

1. 개정 이유에 대한 검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2]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현행 우리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모두 5년의 기간을 적용하고 있었고 실무적으로도 5년 미만의 기간으로 위탁해야 할 사례가 없어 현행 조례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
- 그러나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각각 재계약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2곳이(인왕, 홍제)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5년이 경과하는 2027년 말 경에는 원장의 연령이 67세가 되는 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인 65세를 넘어가게 되어 결국 1년 이상을 무보수로 원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계약시 원장 연령이 66세가 되기 직전까지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바, 위탁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에 두는 내용의 본 개정안이 제출된 것임.

2. 서울시 타 자치구 입법례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위탁기간을 5년 이하(3년~5년)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곳은 5곳(강북, 노원, 마포, 서초, 중랑)에 불과하며 모두 본 개정안과 같이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를 조정사유로 두고 있음.
- 그 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로 규정한 사례로는
 -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노원, 서초)
 -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 시설 재건축 등의 시설물 변동이 예정된 경우
 -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상 서초구)가 있음.

3.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7조(위탁기간 및 재위탁) 제1항은 앞서 개정이유에 대한 검토와 같이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것이고,
- 제2항은 제1항 후단에 있던 내용을 제2항으로 옮겨 규정한 것이며,
- 안 제17조의2(위탁의 취소)는 현행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의 내용을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한 내용임.
- ※ 참고로 안 제17조제2항(현행 제1항)에서 사용하는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자를 다시 수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재위탁(제3호)이 아니라 재계약(제4호)과 같은 의미임.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보육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달라 실무상 다소 혼란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최초 위탁	기존 위탁사무를 새로 공개경쟁	기존수탁자와 연장계약
· 서대문구 민간위탁 조례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
·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변경위탁	재위탁

〈출처 :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별첨〉 조례 입법 제안 목록

1) 개정 제안

조례명	제·개정 방향	소관 부서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탁자 선정 근거 상위법령 규정 필요 선정위원회 민주적 구성 수탁기관 계약 갱신 횟수 제한 취약계층 대상 대관료 및 이용료 면제 대상 확대	사회복지과
과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책무의 주체 수정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연령 대상 명시	사회복지과
과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조항 신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과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조항 신설 노인복지 지원 내용 확대	사회복지과
과천시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명에 부합하는 내용 추가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정의 규정 필요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조항 신설	사회복지과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효행장려금 적정 지급 기준 검토	사회복지과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탈시설 지원 내용 추가 중증장애인 정의에서 상위법령 조문 명시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사회복지과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재활치료비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장애아동으로 용어 수정	사회복지과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최적 관람석 정의의 수정 민간시설의 경우 비용 보조 신설	사회복지과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에 따른 사업 수행 여부 확인 필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설립 필요	사회복지과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 별도 수립 및 위원회 자체 구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 장애인권센터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기관 설치	사회복지과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 조항 신설 의회 견제 장치 강화	문화체육과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 존치 필요성 검토	문화체육과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화재 전승활동비 대상 및 지급 기준 확대	문화체육과

조례명	제·개정 방향	소관 부서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단체 요건 완화 문화예술 지원 육성을 위한 기본조례 검토	문화체육과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신설	문화체육과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노인 체육 진흥 지원 신설	문화체육과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내용 신설	문화체육과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조례로 개정 검토	문화체육과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변경	문화체육과
과천시 주택 조례	내용과 부합하는 조례명 변경 주택건설 기준 삭제	도시정비과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포괄하는 조례명으로 변경 의원 의안 발의 요건 명시 필요	의회사무과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재원조달 방안 명시	기획홍보관실

2) 폐지 제안

조례명	참고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과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통합 검토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로 통합
과천시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과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통합 입법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과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 후 과천시 청년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입법
과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 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과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로 입법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과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반영

3) 신규 입법(제정) 제안

조례명	소관 부서
노인학대 예방 조례	사회복지과
홀로사는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사회복지과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장애인 실종 예방 조례	사회복지과
관광진흥 조례	문화체육과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체육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도시정비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도시정비과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의회사무과